출력기관(출력자): (민간위탁)사단법인 한국직업지도진흥원 강남센터(장수

출력일시: 2024-07-02 10:11:03

취 업 활 동 계 획 서

서비스기관	(민간위탁)사단법인 한국직업지도진흥원 강남센터	담당자명	장수희
		전화번호	070-8887-8465

1. 수급자격자 정보

성명		읻	솔	생년월일	생년월일 960202			02	
수급자격 인정일자			2023-	-09-07	전화번호				
IAP 수립일자			2023-	-09-22	휴대전화		010-2026-4701		
취업지원	2023	. 09. 07.	~	2025. 03. 06.	집중취업	202	24. 12. 07.	~	2025. 03. 06.
서비스기간	기간 (18 개월)	알선기간		(3.0	개월)			

희망근무지①	서울	희망근무지 ②	경기	희망근무지 ③	
희망직종 ①	웹 개발자	희망직종 ②		희망직종 ③	
고용형태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	희망임금	2800만원(연봉) 면접 후 결정 가능	희망근무시간	

3.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획

Ì	구분 프로그램명		프로그램명 참여(예정)기간		운영기관명	전화번호	
	$\sqrt{}$	직업훈련	(디지털컨버전스)AWS 클라우드와 Elasticsearch를 활용한 Java(자 바) Full-Stack 개발자 양성과정	2023-09-13 ~ 2024-02-29	쌍용교육센터	(02)-3482-4632	
	$\sqrt{}$	일경험	주식회사 앨트리	2024-07-01 ~ 2024-09-30	퍼스트인잡서울서부사무소	-	

4.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

구분	참(벼(예정)기	기간	활동	활동(지원)횟수		
√ 입사지원서(취업알선상담 포함)제출	2024-10-01	~	2025-03-06	월	2	회 이상	

5. 취업지원활동비용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

전체 지원대상기간			2023-09-07	~	2024-02-22	전체 지원	한도	300	만원
구분 취업활동비용					√ ·	구직촉진	수당		
지원회차			회차별	지원대성	당 기간	지원한도		회차별 신청일(지	정일)
$\sqrt{}$	1	회차	2023-09-07	~	2023-09-22	50	만원	2023-09-22	
$\sqrt{}$	2	회차	2023-09-23	~	2023-10-22	50	만원	2023-10-20	
$\sqrt{}$	3	회차	2023-10-23	~	2023-11-22	50	만원	2023-11-22	
$\sqrt{}$	4	회차	2023-11-23	~	2023-12-22	50	만원	2023-12-22	
$\sqrt{}$	5	회차	2023-12-23	~	2024-01-22	50	만원	2024-01-22	
$\sqrt{}$	6	회차	2024-01-23	~	2024-02-22	50	만원	2024-02-22	

위와 같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3 년 09 월 22 일

수급자 성명: 임솔 (서명 또는 인)

상담자 성명: 장수희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※

1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에 따른 수급자는 법 제4조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자에게 요청하여 협의·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● 상담자 성명 : 장수희 ●상담자 전화번호 : 070-8887-8465

- 2. 취업활동비용 또는 구직촉진수당은 협의하여 정한 날(지정일)에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. 지정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3.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 또는 창업(근로 및 고용형태 불문)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, '근로 및 사업소득, 이자 및 배당소득, 5대 공적연금소득 등'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지급받지 않아야 될 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면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서 부정수급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(추가징수)등 제재가 있게 됩니다.
- 4.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며,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가 감액 또는 전액 부지급되며,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제8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됩니다.
- 5.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구직촉진수당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